

구미시특별농공지구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특별농공지구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	--

제출연월일 : 2015. .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이유

농공단지 관계법령에 맞게 조례 제명 및 내용을 정비하여 농공단지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활성화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및 관련 용어 정리

- 「구미시특별농공지구관리조례」 ⇒ 「구미시 농공단지 관리 조례」

나. 상위법 변경(안 제1조)

- 「경상북도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조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다. 농공단지 공동시설의 범위 신설(안 제2조)

- 상하수도시설 , 조경시설, 근로자 체육시설, 안전시설

민방위시설, 수방시설, 유수지(遊水池) 시설, 공공복지후생 시설

그 밖에 관리기관이 농공단지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라. 입주기업체 협의회 설치 기준, 구성, 운영 관련 사항 신설 및 개정 (안 제5조, 7조)

- 협의회 설치 가능한 농공단지 기준 신설

· 농공단지 면적 15만 제곱미터 이상, 입주기업체수 10개 이상

- 협의회 회원구성 기준 변경
 - 입주기업체 대표자 전원 ⇒ 입주기업체 70% 이상 이거나
가동 중인 입주기업체 90% 이상
 - 협의회 일반회원(입주기업체,지원기관), 특별회원(일반회원 외)으로 구성
- 협의회 운영 관련 사항 신설
 - 협의회는 매연도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 정기총회 개최, 필요하면 임시총회 개최할 수 있음
 - 협의회 회의는 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마. 농공단지 관리보조 범위 변경(안 제12조)

- 예산 및 재정적립금의 이자수입 범위 ⇒ 예산 및 재정적립금의 범위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구미시특별농공지구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미시특별농공지구관리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구미시 농공단지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공단지 관리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공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산업단지를 말한다.
2. "농공단지 관리"란 농공단지안의 시설의 설치, 용지 및 시설의 매각, 임대, 유지보수와 개량 등에 관한 것으로서 관리상 필요한 업무를 말한다.
3. "공동시설"이란 다음과 같다.
 - 가. 상하수도시설
 - 나. 조경시설
 - 다. 근로자 체육시설
 - 라. 안전시설
 - 마. 민방위시설
 - 바. 수방시설
 - 사. 유수지(遊水池) 시설
 - 아. 공공복지후생 시설
 - 자. 그 밖에 관리기관이 농공단지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3조(농공단지의 관리업무) 농공단지의 관리업무는 다음과 같다.

1. 농공단지안의 용지 및 시설의 매매계약 또는 임대계약 체결
2. 공동시설의 관리
3. 농공단지안의 시설의 운영과 유지, 보수 또는 개량에 따른 사항
4. 농공단지 공동시설의 이용자로부터의 비용 징수
5. 입주기업체의 용지 및 공장 등 시설의 설치와 등록
6. 그 밖에 농공단지안의 시설의 일반적 관리업무

제4조(관리업무의 대행) ① 입주기업체협의회가 농공단지의 관리를 희망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행하도록 한다.

② 공동시설 중 전문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오·폐수처리장에 대하여는 환경관리공단 등 전문관리기관에 따로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오·폐수처리시설의 설치비 및 운영비의 징수를 포함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대행관리하게 하는 경우 제3조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따른 관리업무는 제외한다.

제5조(입주기업체협의회의 설치) ① 농공단지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와 입주 기업체의 상호협력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입주기업체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관리하려는 농공단지의 면적이 15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입주 기업체의 수가 10개 이상이어야 한다.

③ 협의회는 법인으로 할 수 있다.

④ 협의회가 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입주기업체협의회의 설립인가) ① 협의회가 농공단지 관리대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창립총회의 회의록

2. 정관
3.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4. 농공단지 관리계획서
5. 임원의 명단 및 이력서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승인한다.

1. 협의회 정관이 법령 및 조례에 위반되는지의 여부
2. 농공단지 관리능력의 유무

제7조(입주기업체협회의의 구성과 운영) ① 협의회는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반회원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의 대표자로 하고, 특별회원은 일반회원외의 자 중에서 시장의 동의를 받아 협의회장장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

③ 해당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의 70퍼센트 이상이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가동 중인 입주기업체의 90퍼센트 이상이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④ 협의회는 매 연도 개시일 부터 2개월 이내에 정기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⑤ 협의회회의 회의는 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입주기업체협회의의 대행관리) 협의회가 농공단지의 대행관리를 수행할 경우에는 대행 업무의 범위에서 관리기관의 권리를 가진다.

제9조(공동시설의 유지비 등) ① 협의회 또는 대행기관이 농공단지안의 공동시설의 운영, 유지, 보수 또는 개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입주기업체로부터 공동시설의 유지비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제4조제2항의 오·폐수처리시설의 설치비 및 운영비도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시설의 운영, 유지, 보수 및 개량비의 징수에 대한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그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

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공동시설의 설치 및 사용현황
2. 공동시설의 운영, 유지, 보수, 개량비의 산출내역
3. 공동시설의 관리계획 및 현황

제10조(공동시설의 유지비 부담의 기준 등) 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시설의 유지비 부담에 관한 기준 및 산정방법은 입주기업체의 공동사업에 따른 수익의 정도에 의하여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수익의 정도를 산출하기 곤란할 때에는 그 비용의 전체를 입주기업체의 공장대지 면적과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하는 부담비율에 따라 부담하게 한다.

1. 공장대지 면적 비율 60%
2. 종업원 수 비율 40%

② 제1항에 의한 유지비 부담금은 농공단지의 운영상황에 따라 매월 또는 매분기별로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한 유지비 부담금을 기한 내 납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입주계약의 내용에 따라 일정액의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1조(공동시설의 유지비 부담금 징수방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대행기관이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시설의 유지비 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절차와 방법이 포함된 "부담금 징수규정"을 제정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 고지서를 발급 징수하여야 한다.

제12조(농공단지 관리 보조) 시장은 농공단지의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 또는 재정적립금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농공단지의 안전관리 등) ① 시장은 농공단지안의 안전관리, 공해관리, 복지시설, 기타 조경 등에 관하여 입주기업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1. 공장시설물 및 공장작업장의 안전관리와 그 경비에 관한 사항

2. 공해 예방시설의 설치 및 점검 등 관리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체육 및 수용시설 등 복지시설에 관한 사항
 4. 녹지의 조성, 공장의 미화 및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농공단지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시장은 농공단지 안에 설치한 소방시설, 수방시설 등 방재시설을 소방관서 등과 협의하여 수시 점검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보고)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매 사업년도의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사업년도 개시 2개월이내)
 2. 매 사업년도의 수지결산(사업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3. 총회의 의사록(총회 종료 후 2주일 이내)
 4. 제 규정의 제정 또는 개폐(제정 또는 개폐 후 2주일 이내)
-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매 사업년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편성 또는 변경
 3. 협의회 해산 또는 합병
- ③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농공단지 관리사무소의 직제규정
 2. 농공단지 관리사무소의 사무장 임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하여 균형 있는 국토개발과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2. "지식산업"이란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업·연구개발업·엔지니어링서비스업 등 전문 분야의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 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산업을 말한다.
3. "문화산업"이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을 말한다.
4. "정보통신산업"이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을 말한다.
5. "재활용산업"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재활용산업을 말한다.
6. "자원비축시설"이란 석탄, 석유, 원자력, 천연가스 등 에너지자원의 비축·저장·공급 등을 위한 시설과 이에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
7. "물류시설"이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물류단지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7의2. "산업시설용지"란 공장, 지식산업 관련 시설, 문화산업 관련 시설,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재활용산업 관련 시설, 자원비축시설, 물류시설, 교육·연구 시설(도시첨단산업단지에 한하여 첨단산업과 관련된 시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용지를 말한다.

7의3. "복합용지"란 제7호의2와 제9호나목부터 자목까지의 시설을 하나의 용지에 일부 또는 전부를 설치하기 위한 용지를 말한다.

8. "산업단지"란 제7호의2에 따른 시설과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지원·정보처리·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주거·문화·환경·공원녹지·의료·관광·체육·복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국가산업단지: 국가기간산업, 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거나 개발 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이나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걸쳐 있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 일반산업단지: 산업의 적정한 지방 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다.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 그 밖의 첨단산업의 육성과 개발 촉진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제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라. 농공단지(農工團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지역에 농어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육성하기 위하여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4.12, 2011.7.25, 2014.1.21>

1.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삭제 <2010.4.12>
3. 삭제 <2010.4.12>
4. 삭제 <2010.4.12>
5. "유치지역(誘致地域)"이란 공장의 지방이전 촉진 등 국가정책상 필요한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제23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6. "산업집적"이란 기업, 연구소, 대학 및 기업지원시설이 일정 지역에 집중함으로써 상호연계를 통하여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는 집합체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7.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란 지식기반산업의 집적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22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8. "지식기반산업"이란 지식의 집약도가 높은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 8의2. "산학융합지구"란 기업수요에 따라 교육과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는 대학과 연구소를 집적하기 위하여 제22조의4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9. "산업집적기반시설"이란 연구개발시설, 기업지원시설, 기술 인력의 교육·훈련시설 및 물류시설 등 산업의 집적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10. "산업기반시설"이란 용수공급시설, 교통·통신시설, 에너지시설, 유통시설 등 기

업의 생산 활동에 필요한 기초적인 시설을 말한다.

11.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이란 산업단지 입주업종의 고부가가치화, 기업지원 서비스의 강화, 산업집적기반시설·산업기반시설 및 산업단지의 공공시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에 한정하며, 이하 "공공시설"이라 한다) 등의 유지·보수·개량 및 확충 등을 통하여 기업체 등의 유치를 촉진하고, 입주기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12.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이란 기업·대학·연구소 및 제19호에 따른 지원기관이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지식·정보 및 기술 등을 교류·연계하고 상호 협력하여 산업집적이 형성된 지역(이하 "산업집적지"라 한다)의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을 말한다.

13. "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4.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개발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를 말한다.

15. "산업단지의 관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 산업단지의 용지 및 시설의 매각·임대 및 사후관리

나. 산업단지에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유지·보수 및 개량

다.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의 사업활동 지원

16. "관리권자"란 제3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

17. "관리기관"이란 제3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

를 말한다.

18. "입주기업체"란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자원비축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운영하려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3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체를 말한다.

19. "지원기관"이란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융, 보험, 의료, 교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38조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20. "공장의 설립"이란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을 말한다.

21. "공장의 신설"이란 건축물을 신축(공작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공장용도로 변경하여 제조시설등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22. "공장의 증설"이란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공장의 공장건축면적 또는 공장부지면적을 넓히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31조(산업단지관리공단 등)

① 관리권자는 산업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에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산업단지관리공단(이하 "관리공단"이라 한다) 또는 산업단지관리업무를 위탁받기 위하여 입주기업체로 구성된 협의회(이하 "입주기업체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요건을 갖추어 관리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관리공단 및 입주기업체협의회(이하 "관리공단등"이라 한다)는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관리공단등의 재산은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⑤ 관리권자는 관리공단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2. 제31조제2항에 따른 설립요건을 위반한 경우
3.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4. 설립목적 외의 사업을 한 경우
5. 설립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관리권자는 제2항에 따라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설립인가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위탁하거나 관리기관을 입주기업체협의회로 변경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입주기업체협의회는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관리공단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관리권자"로 본다. [전문개정 2009. 2.6.]

제37조(공동부담금)

① 삭제 <1996.12.31>

② 관리기관은 산업단지의 도로, 폐수처리장, 폐기물처리장, 가로등, 그 밖에 산업

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유지·관리하여야 하는 시설이 아닌 공동시설의 설치·유지 및 보수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아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으로부터 공동부담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농공단지의 공동부담금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2.6, 2013.3.23>

③ 삭제 <1996.12.31>

④ 제2항에 따른 공동부담금에 관한 기준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보고 및 검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도지사에 대하여, 시·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장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입지, 공장건축, 공장등록 등에 관한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산업단지의 관리기관·입주기업체·지원기관과 시·도지사에 대하여, 시·도지사는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관리기관·입주기업체·지원기관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공단지의 관리기관·입주기업체·지원기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단지의 관리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산업단지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 일시, 검사 이유 및 검사 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검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검사 시 담당 공무원의 성명, 출입 시간 및 출입 목적 등을 적은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 및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5(공공시설의 범위)

법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1.4.5, 2011.12.8>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공시설
2. 공동방지지설(「대기환경보전법」 제29조에 따른 공동방지지설과 「수질 및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공동방지지설을 말한다), 주차장, 운동장 및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

제31조(시설 부담)

①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1993.11.6, 1996.6.29, 2000.7.1, 2003.1.14, 2005.3.25, 2011.11.16, 2012.4.10, 2014.5.9>

1. 산업단지의 진입도로 및 간선도로
2. 산업단지안에 보존할 녹지 및 공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

3. 용수공급시설·하수도시설·전기시설·통신시설·폐수종말처리시설 및 폐기물 처리시설

4.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

5. 산업단지의 환경 개선 및 산업단지 입주기업 근로자의 생활 편의 향상을 위하여 산업단지 인근에 설치하는 녹지, 공원 및 공공·문화체육시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건설비용은 해당 공공시설의 건설과 관련하여 제40조제9항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용지비, 용지부담금, 조성비, 직접인건비, 이주대책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및 그 밖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4.6>

③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준치시설물의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시설(제1항제5호에 따른 시설은 제외한다)에 관한 시설부담금은 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건설비용을 개발후 분양하는 총면적(기존공장등의 총부지면적을 포함한다)으로 나눈 것에 시설부담금을 부담할 자의 소유부지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준치시설물의 소유자에게 시설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별로 시설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1993.11.6, 2006.4.20, 2007.10.4, 2008.2.29, 2012.11.20, 2013.3.23, 2014.5.9>

④법 제33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시행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공공시설의 비용은 당해 산업단지의 총가용면적(기존공장등의 총부지면적을 포함한다)에 사업시행자가 분양받는 개별가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각 사업시행자가 이를 나누어 부담한다. <신설 1993.11.6, 1996.6.29, 2014.5.9>

⑤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공시설이 특정한 사업시행자만의 사용을 위한 용도로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 공공시설의 위치, 설치목적, 이용상황 및 지역여건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공시설을 사용할 당해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그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1993.11.6>

⑥사업시행자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시설부담금을 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부담할자에게 공공시설의 명칭·설치비용의 총액·부담하여야 할 금액·납부방법 및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여 부담금의 납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준치시설물의 소유자에게 시설부담금을 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시설물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1993.11.6, 1996.6.29, 2006.4.20, 2014.5.9>

제37조의2(관리업무의 위탁)

- ① 관리권자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관리기관에 위탁할 때에는 입주계약체결 및 공장의 등록 등에 관한 관리기관의 업무수행능력을 고려하여 업무위탁의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② 관리권자가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관리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5]

제38조(관리공단 등의 설립요건)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공단(이하 "관리공단"이라 한다) 및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설립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관리할 산업단지의 면적 또는 입주기업체의 수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일 것
2. 산업단지관리능력 및 관리에 소요되는 재정자립계획이 있을 것
3. 입주기업체협의회의 경우에는 해당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의 90퍼센트 이상이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을 것. 다만, 농공단지의 경우에는 입주기업체의 70퍼센트 이상이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가동 중인 입주기업체의 90퍼센트 이상이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을 것 [전문개정 2009.8.5]

제39조(관리공단 등의 설립절차)

- ①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관리공단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공단 설립허가신청서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창립총회의 회의록
2. 정관
3.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4. 산업단지 관리계획서
5. 임원의 명단 및 이력서

- ②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관리권자가 관리공단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설립을 인가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5]

제40조(입주기업체협의회 구성과 운영)

- ① 법 제31조제6항에 따른 입주기업체협의회는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일반회원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의 대표자로 하고, 특별회원은 일반회원외의 자 중에서 관리권자의 동의를 받아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장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
- ③ 입주기업체협의회는 매 연도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정기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 ④ 입주기업체협의회 회의는 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09.8.5.]

제48조(공동시설의 공동부담금 징수의 승인)

① 관리기관이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공동부담금 징수에 대한 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관리권자 (농공단지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공동시설의 설치 및 사용 현황
2. 공동시설의 설치·유지 및 보수비의 산출내역
3. 공동시설의 유지 및 보수 현황

② 관리기관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공동시설의 설치·유지보수를 위한 공동부담금을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과 협의하여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별로 정하는 산출요율에 따라 징수한다.

③ 관리기관은 공동부담금을 산업단지의 운영상황에 따라 매월 또는 매분기별로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8.5]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산업단지의 관리업무)

① 법 제2조제15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0.7.12>

1.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하 "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및 그 집행에 관한 업무
2. 공공시설, 지원시설 및 공동시설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
3. 산업용지의 매각·임대, 그 사후관리 및 산업단지의 입주에 관한 업무
4.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을 위한 공장·지식산업센터, 그 밖의 시설의 설치와 그 매각 및 임대에 관한 업무

5.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을 위한 용수·전기·증기·가스 및 유류의 공급에 관한 업무
6. 산업용지 및 시설의 설치·유지·보수 또는 개량에 따른 이용자로부터의 비용 징수에 관한 업무
7. 산업단지구조고도화에 관한 업무
8.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기술·인력·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업무
9. 환경친화적 산업단지의 구축 및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업무
10. 산업단지 안의 시설의 경비 및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업무
11. 그 밖에 산업단지의 운영 및 입주기업체의 생산활동지원에 필요한 업무

② 법 제2조제15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소유하는 시설이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할 자가 정하여져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1. 도로·환경오염방지시설·용수공급시설·정보통신시설·에너지공급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2. 제1호에 따른 시설 외의 시설로서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전문개정 2009.8.5.]

제33조의2(공동시설의 범위)

법 제37조제2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상하수도시설
2. 조정시설

3. 근로자 체육시설

4. 안전시설

5. 민방위시설

6. 수방시설

7. 유수지(遊水池) 시설

8. 공공복지후생 시설

9. 그 밖에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이 경우 입주업체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9.8.7]

소관 실·과		투자통상과
입 안 자	과 장	김 홍 태
	담 당	전 명 희
	담 당 자	박 미 라 (480-6033)